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 시 거주요건 규정의 당초 취지는 시에 실제 거주하며, 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시의 장기적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으나,
 - 오히려 인재등용의 폭을 우리 시의 인재로만 제한하여 시의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 투자 유치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인천시 거주 요건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이내 우리 시에 거주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보완하여 시의 장기적 발전 도모
- 다른 조례 폐지(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4.4.9.)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안 제2조)
- 나. 거주 요건이 명시된 현행 조례 제2조제5호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임용자격기준”을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조 중 “경제부시장의 임용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경제부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이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로,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해당되는 자와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는”를 “해당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 관한조례</u>	<u>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시장의 <u>임용자격기준</u>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에 따라 ----- ----- <u>자격기준</u> ----- -----.
제2조(자격기준) <u>경제부시장의 임 용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 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 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와 인천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 자는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u>	제2조(자격기준) <u>경제부시장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된 경제부시장은 3개월이내 인천광 역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 -제31조에 따른 ----- -----해당되는 사람은 -----.</u>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현행과 같음)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현행과 같음)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 의 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현행과 같음)
4. 지방행정분야 및 정치·경제·사 회·문화등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u>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u>	(삭제)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②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1.5.30.>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